

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. 12. 05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8. 11. 19.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18. 11. 20.
- 다. 상정일자 :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(2018. 12. 05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생활체육과장 양승열

가. 제안이유

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이용자가 사용개시일 전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, 마포구민체육센터 종합체육관의 전용사용료 기준을 구체화하여 구민중심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기 위함

나. 주요내용

1) 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(안 제9조)

-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중 100분의 10을 공제 후” 를 "전액"으로 한다.

2) 전용사용료의 범위” 의 기준 구체화(안 제8조)

- 일부개정 조례안 제8조(사용료 등)에 의한 “별표3” “전용사용료의 범위” 의 기준을 구체화 함

3. 검토보고 (이주현 전문위원)

- 이진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1.6.9일 최초 제정·공포 되어 현재까지 3회에 걸쳐 개정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.
- **첫번째로**, 이진 일부개정 조례안의 제9조(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제②항 제2호 가목중 “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”를 “전액 반환”으로 개정한 이유는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반환일 경우라도 사용 개시일 전이라면 공제없이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입니다. 이것은 주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.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2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반환 가. 사용 개시일 전 :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	제9조(개인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) 2. ----- 가. ----- 전액 -----

- 한편, 서울시 25개구중 “전액반환 한다”는 내용으로 규정된 구가 강남구 등 10개구, 공제후 반환한다는 내용으로 규정된 구가 우리구를 포함 15개구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**두번째로**, 이진 조례안 제8조(사용료 등) 제①항의 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사용료의 기준인 “별표3”의 “전용사용료의 범위”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.
- 이것은 “마포구민체육센터”내에 설치된 “종합체육관”의 “사용료 기준”에서 “농구코트 1면을 기준”으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
- “마포구민체육센터” 3층에 위치한 “종합체육관”의 면적을 고려하여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용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진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